

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

수신 : 서울특별시체육회

1. 제49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 1월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.

- 보조사업명 :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
- 보조사업자 : 서울특별시체육회
- 교부결정액 : 12,6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(A)	기교부액(B)	1월 교부액(C)	교부 누계(D=B+C)	교부후 잔액(E=A-D)
제49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	2,282,500	-	12,600	12,600	2,269,900
민간경상사업보조(사업비)	2,282,500	-	12,600	12,600	2,269,900
일반운영비	1,512,000	-	3,400	3,400	1,508,600
여비	9,000	-	1,000	1,000	8,000
업무추진비	14,500	-	1,000	1,000	13,500
일반보상금	26,000	-	7,200	7,200	18,800
민간이전	549,000	-	-	-	549,000
자산취득비	172,000	-	-	-	172,000

예산과목 : 일반회계

분야	부문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
문화 및 관광	체육	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	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준비	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	민간경상사업보조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1.1. ~ 2020.12.31
- 사업대상 : 서울특별시, 대한체육회, 36개 회원종목단체 등

○ 사업내용 : 제49회 전국소년체전 개최 지원 및 종목별 경기운영

○ 주요업무

- 종목별 경기장 공·승인 지원 및 경기장 확인
- 종목별 경기용 기구 소요 파악, 구입 및 임차
- 각종 용품 소요 파악 및 확보
- 경기장별 각종 비품 소요 파악
- 각종 회의 개최
- 종목별 대회 운영비 지원
- 종목별 심판, 경기진행요원 확보 및 관리

○ 보조비율 : 시비100%

2.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가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나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다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라.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

마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총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
바.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사.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020년 1월 29일

서울특별시